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67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이달희 · 김대식 · 서천호
유용원 · 고동진 · 이만희
강선영 · 임종득 · 김상훈
김위상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정당추천위원의 상근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u>	<u>第7條(정당추천위원의 상근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u>